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 동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결석 등에 따른 학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가정학습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 법률, 가정학습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 피해 신고 독려를 위해 교육감의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캠페인 등의 실시 의무 규정을 명시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